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2020. 5.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허심판에서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을 제고하고, 각 심판장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합의체를 총괄하는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3급 또는 4급,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완화하여 심판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7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심판장의 분장사무 및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허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·활용을 위하여 특허청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(4급 1명)은 종전 인력(5급 1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4(특허빅데이터담당관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장 밑에 특허빅데이터담당관 1명을 둔다.

②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.

1. 특허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(이하 “특허빅데이터”라 한다)의 실시간 분석·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시행
2. 산업별 실시간 특허 빅데이터 DB 구축·운영 및 관리
3.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·활용 모델 개발 및 확산
4.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·활용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·운영
5.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·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

제16조제2항 중 “심판장 11명을 두고 심판장”을 “두는 심판장 51명 중 11명”으로, “한다”를 “하고, 40명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심판관 96명을 두되, 심판관 중 40명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”를 “두는 심판관”으로 하

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제2호 중 “총괄”을 “총괄(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조사·연구의 총괄”을 “조사·연구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판장”을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”으로 한다.

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심판장은, 소관 분야의 수석심판장으로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소관 분야의 심판처리 계획 수립 및 심판 사건의 조정·배분
2.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심판에 관한 사무총괄
3. 5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
4. 소관 분야의 심판·소송에 관한 조사·연구 총괄

제22조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특허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허심판원 심판관”을 “특허심판원의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”으로 한다.

별표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37”을 “38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825”를 “824”로 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

정령 부칙 제3조 중 “공업사무관”을 “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4(특허빅데이터담당관) ①</u> <u>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</u> <u>한 통칙」 제29조제3항 및 제4</u> <u>항에 따라 청장 밑에 특허빅데</u> <u>이터담당관 1명을 둔다.</u> <u>②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서기</u> <u>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</u> <u>다.</u> <u>③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다음</u> <u>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</u> <u>다.</u> <u>1. 특허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</u> <u>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</u> <u>(이하 “특허 빅데이터”라 한</u> <u>다)의 실시간 분석·활용에</u> <u>관한 계획의 수립·시행</u> <u>2. 산업별 실시간 특허 빅데이</u> <u>터 DB 구축·운영 및 관리</u> <u>3.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</u> <u>· 활용 모델 개발 및 확산</u> <u>4.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</u> <u>· 활용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</u> <u>· 운영</u> <u>5.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</u>

제16조(특허심판원) ① (생략)

②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1명을 두고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특허심판원에 심판관 96명을
두되, 심판관 중 40명은 부이사
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
로, 56명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
·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
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
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
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
· 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
· 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
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
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
보한다.

④ (생략)

<신 설>

·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
홍보

제16조(특허심판원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 두는 심판장 5
1명 중 11명-----

----- 하고, 40명은 부이사관·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
한다.

[illegible]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심판

⑤ <u>심판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(생략) 2. 소관 분야의 심판에 관한 사무 <u>총괄</u> 3. 소관 분야의 심판·소송에 관한 <u>조사·연구의 총괄</u> ⑥ ~ ⑧ (생략) 제22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3조에서 “산업통상자	<u>장</u>은, 소관 분야의 수석심판장으로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소관 분야의 심판처리 계획 수립 및 심판 사건의 조정·<u>배분</u> 2.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심판에 관한 사무 <u>총괄</u> 3. 5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심판에 관한 사무 <u>총괄</u> 4. 소관 분야의 심판·소송에 관한 <u>조사·연구 총괄</u> ⑥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</u>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 <u>총괄(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한다)</u> 3. ----- -- <u>조사·연구</u> ⑦ ~ ⑨ (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) 제22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----- -----
--	---

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”란 특허심판원 심판장 중 3명을 말한다.

② 「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관리과장, 생활디자인심사과장, 국제출원과과장, 컴퓨터심사과장, 통신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 중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
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
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서
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명은 20
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
21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
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공업
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
명으로 본다.

--- 특허심판원의 고위공무원
단에 속하는 -----

②-----

-- 특허심판원의 부이사관·서
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
는 심판장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
한 직급의 존속기한) -----

----- 행정
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
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

수의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
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
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
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
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
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으로
분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]

특허청 공무원 정원표(제19조 단서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<u>37</u>	<u>38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 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 관 · 수의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 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 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<u>825</u>	<u>824</u>	-1
•	•	•	
•	•	•	